

1. 개정이유

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 등 현안 추진을 위해 설치한 도시정비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27일에서 2025년 5월 27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자율기구 “도시정비지원과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756호, 2024.5.28.) 훈령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1827호

자율기구 “도시정비기획준비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훈령안

자율기구 “도시정비기획준비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2024년 5월 28일”을 “2024년 11월 28일”로, “2024년 11월 27일”을 “2025년 5월 2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존속 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<u>2024년 5월 28일</u>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(<u>2024년 11월 27일</u>까지를 말한다)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6조(존속 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1월 28일</u> ----- ----- -----<u>2025년 5월 27일</u> ----- -----.</p>